

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에出席하여答辯할수있는 關係公務員의範圍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의안 번호	104
----------	-----

제출년월일 : 1992년 9월 17일

제출자 :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1. 提案經緯

가. 92년 9월 4일 제12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폐회중 개최한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양운섭위원의 1명이 成案하여 書面動議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제로 상정하여 심사한 바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키로 원안 가결

2. 提案理由

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임.

3. 主要骨子

가. 제1조중 “또는 특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함 (안 제1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에出席하여答辯할수있는 關係公務員의範圍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關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중 “또는 특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특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p> <p>.....</p> <p>.....</p> <p>.....<u>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u>.....</p> <p>.....</p> <p>.....</p>			